

##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PDF]

###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PDF]

####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수시

【공시시기】 : 수시(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 직접입력

【공시내용】 : 당해연도에 확정된 대학 자체평가 결과

【공시양식】 : 제목과 목차 및 자체평가 완료일을 명시한 학교의 자체 양식(PDF 파일 형태)

#### ■ 작성지침

【대학 자체평가 결과】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평가 결과 공시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가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경우 당해연도부터 공시

(예: 평가 분석 대상연도가 2025년인 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이 2026. 6. 30. 경우, 2026년부터 공시)

※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출 보고서는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분석·평정이 아니므로 대학 자체평가로 인정하지 않음

【확정일】 : 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

※ 대학기관평가인증 제출 보고서로 해당 연도 자체평가 보고서를 갈음할 경우,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기관평가인증 제출 보고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 참고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 참고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참고사항

-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
- 확정된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최신 자체평가 결과'만 업로드 후 공시